

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갈등  
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4 월 8 일

여 수 시 장

정기민



여수시 조례 제2183호

붙임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83호

##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1호 본문 중 “제21조에”를 “제20조에”로 한다

제1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회의 등)

⑦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안
<p>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  략)</p> <p>4. <u>제21조</u>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를 위반하였을 때</p> <p>제15조(회의 등) ① ~ ⑥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13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20조</u>----- -----</p> <p>제15조(회의 등) ① ~⑥(현행과같음)</p> <p><u>⑦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